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0. 27.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년 10월 2일

나. 발 의 자: 이성수 의원 외 4명

다. 회부일자: 2025년 10월 15일

라. 상정일자: 제2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5. 10. 2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성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산모와 신생아에게 전문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건강한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구의 책임과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안 제3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범위 및 기준(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용철)

- 본 제정안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 장려를 목적으로 발의됨.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목적, 정의를 각각 규정하고
- 안 제3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지원 범위 및 기준, 신청 절차, 환수 조치 등에 대하여 명시함.

-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해당 사업 홍보 및 협조 요청 가능 규정과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검토 결과

-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과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의거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시행 중임.
- 본 사업의 정부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지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하도록 하여 서울시에서는 소득 기준 관계없이 서울시 거주 산모 모두에게 확대 지원하고 있었으나,
- 전액 지원이 아닌 일부 지원으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 바, 본 조례안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지원 대상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출생아를 우리 구(區)에 출생 등록한 자 중에 셋째아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 산모 등이며 본인부담금의 90% 이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안 통과로 신규로 발생하게 될 본인부담금에 대한 추계 내역은 총 63,477천원으로 예상함.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7제3항에 따라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의 범위를 완화하여 정할 수 있고, 「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제4항에 의거 사회서비스의 수익자 부담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바, 본 조례안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며 집행부서에서는 9월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였음.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15
----------	-----

발의연월일: 2025. 10. .

발의자: 이성수·정선희·김지연
이순우·우경란 의원 (5인)

1. 제안이유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임. 출산 직후 산모는 신체적·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시기이며, 신생아 역시 세심한 돌봄과 보호가 절실함. 그러나 일부 가정은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한계로 인해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본 조례안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전문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건강한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또한 구의 책임과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안 제3조)

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범위 및 기준(안 제4조)

3. 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모자보건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10조 및 제15조의18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자를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본인부담금”이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산모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로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신생아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1.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4. 희귀질환이 있는 산모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산모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 영등포구에 6개월 미만 거주하고 있을 때에는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실제 거주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제4조(지원범위 및 기준)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비율은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예산 상황 및 출산가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단, 서울특별시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유형별 지원금 차액을 지급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산모 또는 법정대리인은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2.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3. 산모 명의의 통장 사본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지원대상 확인 등) ① 구청장은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② 지원금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모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조정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제9조(홍보 및 안내) 구청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배포, 온라인 안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협조요청)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